생로운 시작으로 이 리 구 조 인 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차

_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_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I	사업개요	1
П	건축설계 공모 요강	3
	건축설계 지침	9
IV	제출 도서	17
V	설계공모 심사	2
VI	참고 자료	29
VΙΙ	각종 서식	31



1 민원봉사과

시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진안군이 지역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주 인구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신혼부부 · 젊은 층 · 취약계층 등의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정주 여건 확충하려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공 모 명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위 치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90외 7필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외궁지구), 지방2급하천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대 지 면 적	2,324.6 ㎡ (제외면적 포함) 2,322.6 ㎡ (금회 신청면적) (대지면적 산출시 하천구역은 면적 포함)	
건 축 규 모	연면적 1,187㎡(-3% 범위 내)	
사 업 기 간	2023년 ~ 2025년	
총 사 업 비	4,750백만원(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188,100,000원(부가세 면제 대상)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경계측량비는 발주청 부담)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각종 심의, 협의, 인증기간, 공휴일 포함)	

- * 금회 신청 대지면적은 실시설계 시 분할측량 후 면적 변경 될 수 있다.
- 나. 과업의 주요내용
- 1) 건축, 조경,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통합 기본 및 실시설계
- 2) 각종 예비인증 취득 및 인ㆍ허가 업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수행
-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및 도서

다. 공모방법 : 간이공모

라. 사업 규모 및 주요시설

구분	세부내용	면적(m²)	비고
	거실 및 주방		
	침실1(욕실2,드레스룸)		
	침실2, 침실3		
1세대	공용 욕실1		전체 12세대
	다용도실		
	현관		
	소계	80	
전용면적	12세대*80㎡	960	세대당 80㎡ 이하로 계획
벽체·공용면적	E/V, 홀, 복도, 계단등	180	
커뮤니티공간		35	입주민 공동사용공간
관리사무소		12	
	합계	1,187	

- ** 건축 규모와 주요시설은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하며 상기 시설면적은 확정 면적이 아니며,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연면적은 제시하 합계 면적 미만으로 계획하며, -3%(연면적) 범위내 조정 가능하다.
- * 각 시설의(층별) 배치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함 (지하층, 필로티주차장, 다락은 사업비를 고려하여 배제한다)
- ※ 동별분리,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 허용 범위 내 조정 가능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 창의적 제안 가능
- ※ 사업비를 고려하여 발코니 및 확장형 발코니는 세대당 10m²이내로 계획하여 면적에서 제외한다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업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설계비 및 공사비(재료비 제외)]
- ** 세대별 제안한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세대별 세부 내용은 각각 다르게 제안 가능하며, 최소 59㎡ 이상으로 한다.

Ⅱ 건축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가. 용 역 명 :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나. 공모방식 : **간이공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2023.03.30.)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6조 제1항

2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 진 일 정	유 의 사 항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등 록	2023. 12. 6.(수)	•장 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
현장설명	-	• 응모 신청 후 개별적 현장 방문
질의기간	2023. 12. 13.(수)	•방 법: 서면질의(E-mail)에 한함 (ld8333@korea.kr) ※ 제출 시 질의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질의회신	2023. 12. 18.(월)	•답변 : 서면(E-mail)통보 및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공모안 작품제출	2024.1.24.(수)	 장 소 : 진안군청 1층,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시 간 : 09:00 ~ 17:00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등 일체 서류 접수
공모심사	2024.2.15.(목)	•장 소 : 진안군 상황실(진안군청 2층)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유선통보
당선작 발표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 진안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다. 본 상기일정은 추호 변경 될 수 있으며 응모신청 시 기재한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변경사항 통보

3 참가자격

- 가. 응모 자격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자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수 없으며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 다.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 완료 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관계 규정에 따른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 라. 응모 제한
-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
- 2)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설계공모 등록(응모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

4 참가등록 [응모신청 접수]

- 가. 일 시 : 2023. 12. 6.(수), 09:00 ~ 17:00까지
- 나. 응모접수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진안군청 1층)
- 다. 응모방법
-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불가)
-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라.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1)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2】
- 3)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서식 3】
- 4) 응모 서약서 1부.【서식 4】
- 5) 청렴서약서 1부.【서식 5】
- 6)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서식 6】
- 7)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서식 7]
- 8) 대표자 선임계 및 인감증명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서식 8】
- 9) 보안각서 1부.【서식 9】
-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각 1부.
- 11)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또는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12)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류 1부(공동응모자 포함)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자격증 및 업무 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
- 마. 유의사항
- 1) 등록 방문하는 자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3)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대표업체에서 제출

5 질의 및 응답

- 가. 질의기간 : 2023. 12. 13.(수) 16: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나. 접수방법 : 【서식 10】을 활용하여 E-mail
- 다. 질의접수처 : ld8333@korea.kr(아이디: 엘디8333)(이달우 주무관, 063-430-2476)
- 라. 유의사항
-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 마. 회신일자 : 2023. 12. 18.(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 1) 방 법 : 서면(E-mail)통보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 2)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진안군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응모자가 질의응답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 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설계공모 작품제출

- 가. 제출일시 : 2024. 1. 24.(수) 09:00 ~ 17:00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나. 제출장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진안군청 1층)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모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작품은 응모자별로 1점으로 제한함 (접수 시【서식 1】에 의한 응모접수증 교부)
 -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 라. 제출서류
- 1)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1부.【서식 11】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 6】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2) 심사용 설계도판(A1: 841mm × 594mm) 1매
- 3) 심사용 설계도면+설계설명서 8부 (A3용지 4매 이내-표지제외)
- 4) 설계도서 USB 1매
- [상기 도팬(JPEG), 설계설명서(PDF), 조감도(1장), 조감도 및 투시도(내부 또는 외부)를 저장한 3D 레더링된 이미지(jpg) 포함 1매
- USB에 첨부된 파일은 심사용과 동일해야한다.
- 5) 심사 후 입상작 확인서 1부【서식 20】【서식 21】
- 6)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서식 1】
-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18】
-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19】

7 설계공모 작품심사

- 가. 설계공모 심사 개요
- 1) 일시 : 2024. 2. 15.(목) 14:00 ~
- 2) 장소 : 진안군청 상황실(본청 2층)
- 3) 심사방법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
-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함.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 2024. 2. 16.(금)

나. 당선작 통보

- 당선자에게 서면 통보 및 진안군청 홈페이지 게시

9 설계공모안 반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Ⅲ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시 고려사항

- 가. 건물 형태는 농촌과 어우러지게 설계하며, 옥상등의 활용을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 나. 사업부지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배치 구상 및 외부공간계획 수립시 일체감 및 개방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다. 관련법규를 검토(대지안의 공지, 막다른도로, 건축물의 층수제한등)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계획하고 부대시설(주차장, 조경, 휴게공간)등을 계획하여 배치 대안의 특성을 검토기준에 맞추어 상대 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대안별 비교 검토를 실시, 최적의 시설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 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 할 것
- 마. 주거 용도를 고려하여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커뮤니티공간으로 확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확성화에 유도하도록 계획하다.
- 바. 사업대상지로 직접 접근 가능한 접근로가 없으며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충분한 폭의 차로와 구분하여 계획
- 사. 건축물의 공간구획, 배치, 건축자재, 입면의 창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
- 아. 패시브 계획 등 건축물이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1)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윸,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 2)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 3)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설계에 반영
- 4) 신재생에너지(태양광등)를 설치하여 유지비(난방비등)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계획
- 자. 설계공모(안)은 제출 시점 해당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 미검토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 있음
- 차.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할 것.
- 카, 지하층, 필로티주차장, 다락은 사업비를 고려하여 배제한다
- 타. 사업비를 고려하여 발코니 및 확장형 발코니는 세대당 1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개요 면적에서 제외하되, 공사비 산출에는 포함한다.

2 배치 및 평면계획

가. 배치계획

- 1) 사업부지 인근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한다.
- 2) 사업부지는 다방형 형태의 토지로 외진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녹지, 텃밭, 휴게공간등으로 계획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3) 건축물 배치 시 사업대지 동쪽의 임야(자연경관), 북쪽의 공원(휴게공간연계), 서쪽의 도로 변(소음 및 프라이버시)등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배치 계획한다.
 - * 동측 하천(외궁천)으로의 접근성, 휴게공간등의 계획을 반영한 외부 활용 계획
- 4) 시설배치는 향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5) 출입구, 엘리베이터, 공용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이 편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 6) 건물 및 주차장 영역은 집약시키고,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입주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한다.
- 7)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계획은 건물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계획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시 비상차량(소방차 등)이 주차 가능한 유효공간을 건물 인근에 조성하여야 한다.
- 8) 각종 행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전면광장) 확보한다.
- 9) 건축물 배치시 하천구역선 내에는 건축물 배치가 불가하며, 대지면적은 포함하여 계획한다. 도로 폭 미달 및 도로 가각 전제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계획한다.

나. 평면계획

- 1) 건축물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의 편의성, 공간성, 유지관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 2) 향 및 조망, 통풍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을 계획하며, 세대간 프라이버시(특히 1층등 저층부)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3)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 4)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은 가능한 자연통풍 및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5) 주민편의공간 및 공유영역은 진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거나 중심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며, 개인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획하다.

6) 건축계획시 주거공간은 방 및 가족실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면 유형을 도입하고 세대 특성에 걸맞은 쾌적한 거주환경 계획한다. 침대, 식탁, 붙박이장등 가구 배치를 통하여 공간구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외기 위치를 반드시 표기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시설계획

- 1) 입주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실외공간은 설계자 제안)을 계획한다.
- 2) 관리사무소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커뮤니티공간 및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을 계획한다.
- 3)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자전거보관소 위치를 계획한다.(면적제외)

3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주안점

- 가.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 한다.
- 나. 주변 교통여건 및 교통계획을 고려하여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다.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
- 라.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 마.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계획
- 바. 대지 경계부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디자인 요소가 반영되도록 계획
- 사.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을 고려한 계획
- 아. 범죄예방설계(CPTED)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
- 자. 부지가 정방형 택지형태의 조성되어진 토지가 아닌 다방형 형태의 토지로 외진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녹지, 텃밭, 휴게공간등으로 계획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차. 주차장은 8대 이상으로 계획한다. (장애인주차장 1대포함)

4 입면계획

- 가.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
- 나.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
- 다. 건축물의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
- 라. 지나친 치장을 지양하고 농촌 풍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설계 계획
- 마. 실외기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구조계획

-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
- 나.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1) 적용규정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 2)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충별(용도별) 배치계획
- 3)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4)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이어야 하며, 설계공모시 공사비(예산)을 고려한 총공사비 등 공사비 절감 방안 고려하여야 함
- 5)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편안함과 건물의 기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 6) 대지의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함
- 7) 옥상에 태양광 설치 및 휴게공간, 조경등의 하중을 반영

6 경관 및 조경계획

- 가.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 나. 건축물과 조경 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여,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 다.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 수종을 검토하고 대경목 위주의 조경수를 계획하도록 하 며,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 라. 이용 계층별 목적에 맞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며, 내부 프로그램과 외부 공간을 적극 연계 하여 열린공간이 되도록 계획
- 마. 친환경 공법의 적용 및 환경디자인 계획
- 바. 편의 및 휴식, 차폐등을 고려한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을 포함

7 주요자재 계획

가. 주요자재는 시공후 효율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성능의 자재 중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재를 선정 반영

-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중에서 선정
- 다. 주유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
- 마. 주요공정별 1개품목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재는 경제성, 성능 및 품질 등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지역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

₩ 제출도서

1 공통사항

- 가.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업체)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 나.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며,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외래어 사용은 ()속에 넣어서 명시할 수 있다.
- 다. 설계도면의 축척은 설계자 임의 축척으로 표현
- 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
- 마. 모든 제출 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 좌철 제본만 가능함
- 바. 모든 설계도서는 제시된 형태나 디자인 외에 어떤 형태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기 제본된 도서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표식이 보이지 않아야 함
- 사. 작품 접수는 제출 기한 내 제출하며 마감 시간 및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및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아. 주요 실의 명칭만을 직접 기재한다.
- 자. 설계도판은 전체 칼라사용이 가능하다
- ** 조감도와 투시도 이외에 기타표현(다이어그램, 텍스트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계획을 기준으로 응모자가 파단하여 작성한다.
- 차. 모든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한다.(PDF, JPEG 등으로 별도 제출)

2 설계설명서

- 가. 규격 : A3(420mm×297mm) 크기로 테두리 없이 장방향으로, 좌측을 접착제로 철하여 제출
- 나. 지질 :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m²), 내용지는 백상지(더블에이)
- 다. 제본 시 접착제 제본만 가능(스프링, 스테플, 클립, 링, 와이어 등 사용 불가)
- 라. 설계설명서 : 8부

내용 및 순서	세부 내용	쪽 수
1. 표지	【서식12】	1
2. 건축개요	-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서식13】 -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서식14】 - 3차원 이미지(칼라)	1
3. 건축설계개념 및 건축계획(안)	- 계획시 설정한 주요 개념 및 설계 의도 - 주요도면(배치, 평면, 입면, 주요단면)	2
4. 기술검토	- 주요법규 검토서【서식15】및 추정 - 예상공사비 내역서【서식16】 - 적용구조에 대한 상세내용 첨부	1

- * 표지 제외 4페이지 이내(흑백)
- * 3차원이미지(조감도 및 투시도)는 전체 3컷 이내로 제한(칼라만 가능)
- 마. 표현방법 : **도면의 표현은 흑백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는 사용할 수 없음** (3차원 이미지는 칼라 사용 가능)
- 바. 설계도면 쪽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중앙하단에 "1"부터 표시할 것
- 사. 8부 중 보관용 1부는 표지에만 대표 건축사사무소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날인하고, 심사용 7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사용할 수 없음
 - ※ 보관용과 심사용은 별도로 제출. 보관용은 규격봉투(입상작 확인용)와 함께 포장하여 제출

3 설계도판

도판 1
조감도 또는 투시도 디자인 개념도 설계개요 배치도 도판 2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내투시도

가. 심사용 설계도판(1매)

- (1) 규 격 : A1(841mm × 594mm) 크기를 1매로 한다.
- (2) 제출방법 : 작품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10mm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도판 게시 방향은 세로로 한다)

- 나. 도판에 표시할 도면의 종류
 - (1) 설계개요 및 핵심개념 작성
 -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등 개요를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내는 핵심개념 등에 대한 사항을 표기
 - (2) 배치도
 - 이용자 접근 계획성, 시설배치, 도로, 조경, 주차장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
 - 대상 부지 주변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 (3) 평면도(가로.세로부분 치수기재) 각 층별로 작성
 - 각 층별로 작성하고, 지상 1층의 경우 대상지 내·외 상황표현
 -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배치와 평면을 함께 표현
 - (4) 입면도 2면
 - 2면(입면도 작성도면의 최소 면수는 2면이상 작성)
 - (5) 단면도 2면(가로, 세로부분 치수기재)
 - 2면(종·횡 단면도 전체를 표현) 작성
 - (6) 3차워 이미지
 - 조감도 및 투시도로 전체 3컷 이내로 제한 (설계설명서 동일이미지 사용할 것)
 - (7) 디자인 개념도
 - 디자인 컨셉, 프로세스등 건축설계지침을 반영한 설계자의 의도를 자유롭게 표현
 - (8) 축척을 제시하지 않은 도서를 작성할 때는 설계자가 도판크기에 맞게 자유롭게 표현
 - (9) 도판내용 중 칼라표현 및 렌더링 여부, 재질표현, 프로그램사용 등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4 전산화자료 USB

- 가. 설계도서 USB 1개
- 제출목록 : [상기 도판(JPEG), 설계설명서(PDF), 조감도(1장), 투시도(내부)를 저장한 3D 렌더링된 이미지(ipg) 포함
- 나.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USB 등에 암호, 제출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하여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5 제출도서의 익명성

- 가.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응모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나.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함
- 다. 사무소명 및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음
- 1) [서식20]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을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서식21]의 규격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심사용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와 같이 1개의 묶음으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인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시 개봉함
- 2) 설계도판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시 사용 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함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 진하게

40 20 (단위: mm) 20 40

- 3) 심사용 도판은 설계도서 포장 동일용지로 별도 포장하여 같이 제출 ※ 심사용 설계도서와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1개 묶음, 심사용 설계도판 1개 묶음
- 4) 심사용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부여는 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 후 규격봉투(입상작 확인용)와 제출도서에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함

♡ 설계공모 심사

1 심사위원회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 시 제2023-180호(2023.03.30)에 의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

나.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비고
1	최 명 회	라움 건축사사무소	
2	권 중 곤	(유)예일 건축사사무소	
3	전 성 민	건축사사무소 담쟁이	
4	김 중 원	아진 건축사사무소	
5	조 달 구	건축사사무소 우반	

※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심사 당일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 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2)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시 심사를 진행하고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 위원회를 다시 개최
- 3)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축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4)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한다.
- 5) 설계공모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라. 심사위원의 기피, 제척

-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 신청[서식 17]을 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2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제(제척)한다.

2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1)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을 참고로 하고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 2) 작품 심사방법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 혼합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3) 작품 심사 전 본 지침에 따라 제출 작품별 실격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최종 입상 작품 선정 후 당선작품의 위원별 향후 설계시 개선(또는 유지)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받아 향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 5) 실격 작품을 제외한 작품이 5개를 초과할 경우 1차 및 2차 표결 방법으로 5개 작품을 선정 후 최종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채점표 점수 평가를 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6) 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심사배점표에 따라 평가(감점 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입상작을 결정한다.
- 7) 동점 작품수가 나올 경우 공간계획, 배치계획, 경관계획, 기타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 8) 종합평점 산정방식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9)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나. 심사 : **일정표 참조(page 3)**, 만약 변경 시 별도 공지

다.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배 점	점 수	수	우	미	양	가
	◦다방형 형태의 사업부지 현황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토지 활용도		평 점					
배치계획	 접근성, 편의성, 주변환경(동측의 임야 및 외궁천, 북측의 공원)을 고려한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설계주안점 및 고려사항 8p~10p 반영 계획 	30	평 가					
공간계획	○ 평면계획 및 내·외부공간의 적절성 ○ 각 공간별 기능을 고려한 자연 채광 및 환기 계획, 가구배치 계획		평 점					
	◦건축 공간별 조닝 및 동선, 외부 테라스 계획 ◦설계주안점 및 고려사항 8p~10p 반영 계획		평 가					
거고나게칭	○ 농촌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외부 입면 및 형태 디자인 계획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외부 공용공간의 경관 계획 ○ 설계주안점 및 고려사항 8p~10p 반영 계획	30	평 점					
경관계획			평 가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한 설계기법의 우수성, 건물구조 및 공법등의 우수성 검토		평 점					
			평 가					
	평가점수	100	계					

라. 업체수별 등급 배분

1)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시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 (90%), 미(80%), 양(70%), 가(6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아래와 같다.

공모안			등 급		
공모안 접수수	수	우	미	챵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2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양, 가, 우, 미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킨다.

마.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등은 발주자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1) 불이익 등 처분 절차 및 방법

- 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가점 및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에서 가점 및 감점 기준에 의거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가점 및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가점 및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2) 실격처리기준

항 목	심사규정
①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시정 불가능 하거나 불가피 한 것) - 건축선, 대지안의공지, 층수, 건폐율, 일조권등	
0 10 0 0 11 1 0 10 111 100 110 01	심사위원회 의결로
③ 응모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실격 여부 결정
④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⑤ 건축규모(연면적을 초과하거나 -3% 초과하여 설계)	
⑥ 계획 변경, 이미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자의 제안사항 금지)	
⑦ 제출도서에 해당없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이미지등이 포함된 경우	

3) 감점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감 점			
법규위반	건축법등 경미한 법령 위반(1건당)	-5점/건			
	예정공사비 초과				
지침위반	지침위반 설계지침상의 제시면적(총연면적) -3% 초과 또는 미달 시				
(도시규격 및	제출도서 쪽수 초과(1쪽당) 및 제출도서 부족(1부당)	- 2점/매			
과다설계 등)	제본방법 및 곁표지 작성기준 미준수(1건당)	- 1점/매			
	기타 지침상의 도서 작성기준 위반(1건당)	- 1점/건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의 실격 및 감정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감점은 심사위 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평가방식 또는 평가항목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가 소요예산을 현저하게 초과 하는 경우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설계변경등 불가)
-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마. 당선작 선정 및 계약

1)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 또는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
-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2)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가 결정되면 7일 이내 그 사실을 서면 통지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낙찰자에게 부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발주 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차선작을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한다.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
-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입상자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지급 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 유의서 등 관련 예규를 따름
- 3) 당선작 설계자는 진행 과정 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함
-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 결과 보완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
-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보상금은 반환
-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 당선자로 결정된 후 사업계획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이에 대한 경우 설계공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 (발주처 추가 요구사항 발생시 혐의)

마.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 1)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함
- 2) 심사결과 5위 이내 공모안 중 입상작으로 평가하기에 미흡한 작품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상작의 수를 축소할 수 있음
- 3) 공모안 보상내용

- 당선자 :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 (천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

※보상비 : 예산 15백만원

입상작	순위	자격	적용기준	보상금
1개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개 응모)	2	우수작	15백만원의 1/3	만원
 2개 이상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5백만원의 4/10	만원
(3개 응모)	3	가 작	15백만원의 3/10	만원
•	1	당선작	-	설계권 부여
3개 이상	2	우수작	15백만원의 4/10	만원
(4개 이상 응모)	3	가 작	15백만원의 3/10	만원
,	4	장려작	15백만원의 2/10	만원

-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금액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
- 입상자가 확정되면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바. 작품의 반화 및 처리

- 1) 공모안의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법 등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함
- 2) 발주기관은 별도의 보상 및 허락 없이 공모안을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보고서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입상자 이외의 응모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 3) 당선작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이 보관하며, 심사결과 발표 후 당선작은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음
- 4)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위 기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에 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음

사. 설계공모의 재공고

-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 재공모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2)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1개 업체일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
-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 각 응모작품은 작품접수 개시일로부터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보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단, 운송 과정 등 다른 기간에 발생하는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7) 본 설계공모 응모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앞의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지불하지 않음

3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 가.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 제출물의 소유권은 주최자에게 있음. 주최자가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4 기타

- 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모하며, 재공모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
- 나.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다.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5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군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 2) 당선자는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함
- 3)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우리군과 설계계약에 관해 협의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4)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 5)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나. 설계 진행

- 1) 당선자는 진행과정 별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3)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4)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우리군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2) 이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Ⅵ 참고지료

■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부지



<위치도>





<사업부지 현황>

2 건립사업 토지조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면 적 지역지구		비고
합계					2,322.6		
1	성수	외궁	690	대	221.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포함
2	성수	외궁	690-1	대	75.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포함
3	성수	외궁	689-6	답	29.2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4	성수	외궁	689-1	대	228.7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성수	외궁	689-1	대	-2		도로가각면적제외
5	성수	외궁	691-1	대	286.1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6	성수	외궁	687-1	대	380.7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7	성수	외궁	689-4	목장용지	763.9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포함
8	성수	외궁	689-3	대	339.6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	하천구역포함

VII 각종 서식

- 【서식 1】응모신청서
- 【서식 2】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서식 3】사용인감계 ※인감(법인) 증명서 포함
- 【서식 4】서약서(응모자)
- 【서식 5】청렴서약서
- 【서식 6】위임장, 재직증명서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 8】대표자 선임계
- 【서식 9】 보안각서
- 【서식 10】서면질의서
- 【서식 11】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 【서식 12】설계도면 표지
- 【서식 13】건축개요
- 【서식 14】시설면적표
- 【서식 15】관련법규 검토서
- 【서식 16】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서식 17】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서식 18】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 【서식 19】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서식 20】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 【서식 21】규격봉투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건축사명 주민등록번호 丑 건 축 사 전화번호 사 무 소 소재지 FAX번호 E-MAIL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설계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 공동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것. 2023 . . . 신청자(대표자) : ((1) 진안군수 귀하 ___ (인) ____ 절취선 ____ (인)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3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진안군수 귀하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3 . . .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응 모 서 약 서

당사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1. 당사는 본 설계공모 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 2. 당사는 설계서의 모든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3. 당사는 진안군에서 설계공모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6】 위임장, 재직증명서

청렴서약서

당사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위 임 장

	업 체 명	성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업 체 명	성 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 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 . . .

업체명: 대표자: (인)

진안군수 귀하

재 직 중 명 서									
주민등록번호									
직 위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3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 동 수 급 표 준 협 정 서

제1조(목적)	\circ	협정서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	원이	재정,	경영,	기술	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리	내의 공사,	물품	또는 용	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지	나비율에
따라 공동	Ē 연	대하여 7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결	구하는	협약을	을 정학	함에	있다.		

- 1. 계약건명 :
- 2. 계약금액 :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고도스그케이	며치	시나 자리	人게기	미고기노	다. 이 기	フトート
41/42(およしほね)	중중구급세의	병생,	사업장의	오색시,	네효사는	나눔과	슅 너,

- 1. 명 칭 : ○○○
- 2. 주사무소소재지 :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쳬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000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 이전할 수 없다.

2. (()()() :

-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구 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혐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 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혐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3 . . .

○○○ (인)

○○○ (인)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 주택 거립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에게 위입합니다.

※ 첨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에 한함)

2023 . . .

○ 공동응모 대표자

대표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건축사 성명: (인)

○ 공동응모 응모자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업체명:

대표건축사 성명: (인)

진안군수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10】 서면질의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2. 응모신청일 : 2023 . . .

3. 작품제출일 : 2023 . . .

본인은 2023년 월 일 귀 군에서 공고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 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2.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 . .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E-mail :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할 것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 접수	※ 접수번호 :								
작 품 제출자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수 한 첨부] 2 3 4	귀 군에서 시행하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도판 2매. 2. 설계설명서 10부. 3. USB 1매. 4. 심사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 1부.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18호) 1부.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19호) 1부.								
		2023							
진안급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절 취 선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용모작품 제출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건축사)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39 -

【서식 12】 설계설명서 표지(제출 시 파란색 글씨 삭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3. .

가로 · 세로 가운데 정렬
- 사업명 글자크기 33 Point / 날짜 글자크기 25 Point,
글씨체 HY견고딕체 / 장평 100%, 자간 0%

건 축 개 요

	구 분		설계니	ዘ 용		비그	1
	명	칭					
	대지위치 대지면적						
					m²		
	건축	축면적			m²		
		합 계			m²		
	연면적	지하층			m²		
		지상층			m²		
 설계	주의	요구조					
결계 개요	주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지하	층/지상	층		
	최	고높이			m		
	승	강 기			대		
		비개요					
		부마감					
		창면적	m²(さ	·면적비:	%)		
주 차		계			대	※ 법정 :	대
개요	주	박대수			대		
조 경 개 요	조	경면적			m²		
		계		%(kw)		
신재생	태	양 광		%(kw)		
에너지	태	양 열		%(kw)		
비율	지	열		%(kw)		
	기	타		%(kw)		

※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형발코니) 단 옥탑층은 제외한다.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시설면적표

구 분	용도	면 적(m²)	비고
소 계	합 계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발코니, 확장형발코니) 단 옥탑층은 제외한다.

※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서식 16】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관련법규검토서

법규명(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고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공 종 명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m'당 금액	구성비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ᄁᄼ	조적공사						
건축 공사	방수공사						
6/1	창호공사						
	수장 공사						
	마감공사						
	기타공사						
見	목공사						
2	경공사						
기계	설비공사						
전	^넌 기공사						
툥	통신 공 사						
소방공사							
7	l타 공 사						
폐フ	물처리비						
ė	. 계						
ᄌ	∥ 경 비						
총	등공사비						

- * 공사비 산정시 건축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발코니, 옥탑등)
- * 공사비 산출 관련자료 표기(유사사례등)
- * 공모안 당선후 과도한 디자인 및 재료선택에 따른 공사비 초과시 사업예산에 맞춰서 재설계 하거나, 공모안대로 설계시 초과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 변경은 반영불가.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

- □ 공 모 명 :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 □ 기피·회피 위위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필수입력)

2023 . . .

제출자 소속:

연락처 :

직 위:

성 명: (인)

진안군수 귀하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 업체는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설계공모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어떠한 형태(SNS, 유·무선, 방문 등)로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사전접촉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사전접촉 형태	해당 심사위원	비고
없음()/ 있음()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	

2023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연 락 처 :

명 : (인)

○ 공동응모업체 또는 건축사

업 체 명: 연 락 처 :

> 명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20】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본 업체는 진안군에서 발주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참 가자로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모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 하고 공명정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사위원회 위원과 일체의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접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연 락 처 :

성 명: (인)

○ 공동응모업체 또는 건축사 업 체 명 :

연 락 처 :

성 명: (인)

진안군수 귀하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대표자 날인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성 수 면	
소 규 고 모	
 건 입 사 업	풀
 설 계 공 모	칠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응모작품 확인서	
l 확 인 서	
풀 칠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